

IMF한파 위에 덮친 환경규제 강화

정유업계 환경규제 완화 건의... 투자부담 감당키 어려워

정유업계는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을 축소조정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화부담이 크거나 조정이 필요한 환경규제는 완화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정유업계의 건의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와 관련하여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개선을 위하여 약 690억원이 소요되고 육상출하시설의 하부적하방식(Bottom Loading)으로의 개조를 위하여 약 5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2000년 말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정유업계에서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시설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시기를 2004년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철도 및 송유관에 대해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 업계에 더욱 막대한 비용부담을 줌으로 이를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포함한 24개시·군에 시행중인 황함량 0.5% 중유의 공급을 금년 7월 1일 이후 16개시·군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토록 고시한 데 대해 저유황원유 도입비용과 탈황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제조코스트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0.5%중유 공급지역을 1.0%중유 공급지역으로의 변경고시와 금년 7월 1일부터 0.5%중유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3년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97년부터 시행중인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의 납부기한을 3년간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다.

휘발유 품질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휘발유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현재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시설 투자가 전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안하여 '98년 4월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한 '99년 4월부터 적용하고 2000년 1월 품질기준은 3년 유예한 2003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새로운 휘발유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며, 정유사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1997년 대비 1998년에 약 1천 2백만달러, 2000년에는 약 4천 8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공업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유류 80mg/kg(BTEX 총량)를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유류 230mg/kg으로 완화하고,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오염방지조치를 완료해야 하나 미국등 선진국처럼 인근주민이나 농작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염지역에 대하여는 복원기간을 복원계획서에 제시한 대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